

# 이용자 부담액 경감제도

개호서비스 등의 이용자 부담에는 아래와 같은 경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## <고액 ( 의료 합산 ) 개호서비스비>

◆ 1개월간의 개호서비스의 자기 부담 합계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이 급부됩니다 (오른쪽 표 참조). 또, 1년간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액의 합계가 현저하게 고액이 된 경우, 일정 금액이 「고액의료합산개호서비스비」로써 급부됩니다.

소득 구분		상한액
생활보호수급자		15,000 엔 ( 개인 )
구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자	① 노령복지연금수급자	
	② 과세연금 등 수입과 소득금액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	
①, ② 이외의 분		24,600 엔 ( 세대 )
일반 ( 구시정촌민세 세대 과세자 )		44,400 엔 ( 세대 ) (※ 1)
현역 동등 수준 소득 상당 (※ 2)		44,400 엔 ( 세대 )

※ 1 일반 구분에 해당하는 분으로, 1년간의 개호보험 이용자 부담액의 합계가 현저하게 고액이 된 경우, 특별히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※ 2 과세소득이 145 만엔 이상인 분 ( 단, 세대 내의 수입에 따라 신청에 의해 일반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).

## 식비 등의 자기부담과 경감제도 <특정입소자개호서비스비 (보충급부)>

◆ 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통소개호 ( 데이서비스 ) 나 단기입소 ( 쇼트스데이 ) 등 시설 등에 가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소요된 식비, 광열수비 등의 거주비 ( 체재비 ), 기타 일상생활비 등이 이용자 부담이 됩니다.

◆ 시설서비스나 단기입소서비스의 부담액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만, 소득이 낮은 분 ( 이용자 부담 단계가 제 1 단계부터 제 3 단계까지에 해당하는 분 ) 은 소득에 따라 식비·거주비 ( 체재비 ) 의 부담액이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

◆ 단, 배우자가 주민세 과세자인 분이나 예저금 등의 금액이 일정액 ( 단신 세대의 경우는 1,000 만엔, 부부의 경우는 2,000 만엔 ) 을 초과하는 분은 식비·거주비 ( 체재비 ) 의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※ 이용자 부담의 기준은 18 페이지 참조.

## <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이용자 부담액 경감제도>

◆ 구시정촌이 「생계유지가 곤란하다」 고 인정한 이용자에게 개호서비스의 10% 부담과 식비, 시설의 거주비 등의 자기부담을 약 4분의 3 으로 경감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

**이용자 부담액의 각 경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구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.**